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 관련 기본권을 말살하는 위헌적, 전체주의적 행태를 중단해야

이번 개천절에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카퍼레이드식 드라이브 스루 대정부 시위를 하려하자 경찰은 이를 불허하겠다고면서, 차량시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당해 차량은 현장 견인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금일 정부의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코로나 방역을 빙자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시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처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넘어 거의 말살하려는 행태이다. 특히, 상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밀폐공간인 지하철과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는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로 인해 코로나의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차량집회의 행태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며 행복추구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기본권이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코로나 환경에 맞게 비대면적이고 평화적 방식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시위를 하려는 양식있는 국민들을 마치 적병 다루듯 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그럼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코로나 방역을 빌미삼아 마치 전투하듯 강제력으로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행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즉시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한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가벼이 한 국무총리와 경찰당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의 위헌적인 행태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9.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운영위원 김익환